

# 2026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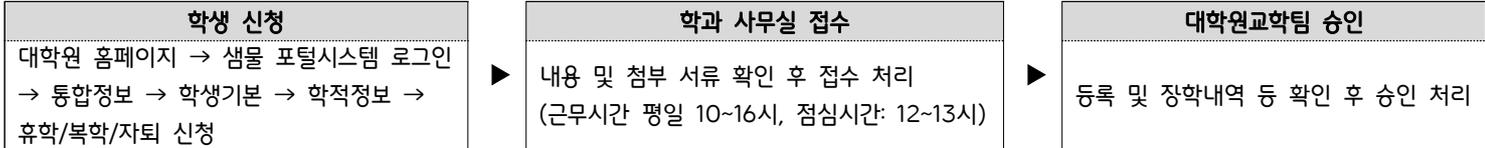
## 1. 관련

- 가.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및 제12조(복학)
- 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3조(휴·복학)

## 2. 신청 기간: 2026. 2. 3.(화)~2. 7.(토)

## 3. 신청 방법: 샘물 포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4. 처리 절차



## 5. 휴학 및 복학 안내

구분	내용	기간
휴학	<b>일반휴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li> <li>•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박사: 통산 2년</li> <li>• 통합과정: 통산 3년</li> </ul>
	<b>질병휴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li> <li>• 1학기 단위로만 신청</li> <li>• 수업일 2/3 이상을 재학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가능</li> </ul> <b>[첨부 서류]</b>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b>군휴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li> <li>• 의무 병역 기간이 경과한 장기복무자는 1년에 1회씩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휴학기간 연장</li> <li>• 수업일 2/3 이상을 재학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가능</li> </ul> <b>[첨부 서류]</b>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복무기간 *휴학 기간에 미산입
	<b>모성보호 휴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li> <li>•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포함) 또는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는 경우</li> </ul> <b>[첨부 서류]</b>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산 2년 *휴학 기간에 미산입
	<b>직장휴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지 변경, 업무 전환, 연수 등으로 인한 휴학</li> </ul> <b>[첨부 서류]</b> 재직증명서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산 1년 *휴학 기간에 미산입
	<b>창업휴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창업으로 인한 휴학</li> </ul> <b>[첨부 서류]</b>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산 2년 *휴학 기간에 미산입
	<b>직권휴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전염병 및 기타 사유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학과장 등의 요청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의 직권으로 휴학</li> <li>•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정전염병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자</li> <li>2. 천재, 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자</li> <li>3. 미등록, 미복학 제적 대상자 중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자</li> </ol> </li> </ul>	
복학	<b>일반복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복학 신청</li> </ul>	
	<b>군복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휴학 만료 후 복학 신청</li> <li>• 병역의무로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일지라도 전역일 또는 귀향 조치일이 속하는 직후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원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소집연기증명 서류 첨부</li> </ul> <b>[첨부 서류]</b>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소집연기증명서	

## 6. 유의 사항

### 가. 휴학 시 유의 사항

- 1) 학·석사연계과정 및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병역의무, 질병사유 및 모성보호휴학 이외에는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이 사증 발급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입국이 지체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2) 신입생은 입학일 이후 휴학 신청이 가능
- 3)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저절로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학생이 직접 복학 또는 휴학(휴학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나. 복학 시 유의 사항

- 1) 복학 신청이 승인된 후 수강신청 가능

다. 외국인의 경우, 대학원교학팀 담당자(한예리 02-2287-7015)와 사전 상담 필요

일 반 대 학 원 장

교 육 대 학 원 장

통 합 심 리 치 료 대 학 원 장

경 영 대 학 원 장

문 화 기 술 대 학 원 장